

|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의결연월일 | 2019. . . (제 회) |

| | |
|------|--|
| 의결사항 | |
|------|--|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 제출연월일 | 2019. 10. 7. |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9. 10. 7.

제 출 자 : 고성군수

가. 제안이유

-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2019. 1. 1.~2019. 12. 31.) 만료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
- 「고성군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 규정」

다. 주요내용

- 시설개요
 - 고성군공설화장장 (기준: 2019. 9.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 | 화장로수 | 화장능력 | 방식 | 비고 |
|-----------|-----------------|----------|--------|------|------|-----------|----|
| 고성군 공설화장장 | 상리면 장치로 220-163 | 1985.10. | 102 | 2 | 6구/일 | 무연무취 (등유) | |

- 고성군공설봉안당 (기준: 2019. 9.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 | 봉안능력 (기) | 봉인기수 | 잔여 | 비고 |
|-----------|-----------------|---------|--------|----------|-------|-----|----|
| 고성군 공설봉안당 | 상리면 장치로 220-163 | 1991.12 | 482.19 | 4,206 | 3,529 | 677 | |

· 장기공설공원묘지

(기준: 2019. 9.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m ²) | 매장능력 (기) | 매장기수 | 잔여 | 비고 |
|--------------|---------------------|--------|----------------------|----------|------|-----|----|
| 장기공설 공원묘지 |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 2002.1 | 7,381 | 382 | 258 | 124 | |

· 장기공설봉안묘

(기준: 2019. 9.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m ²) | 봉안능력 (기) | 봉안기수 | 잔여 | 비고 |
|-------------|---------------------|--------|----------------------|----------|------|-----|----|
| 장기공설 봉안묘 |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 2002.1 | - | 210 | 27 | 183 | |

○ 현위탁자 현황

| 소재지 | 시설명 | 위탁처 | 비고 |
|--------------------|---------------------|-------------------------|------------------------------|
| 상리면 장치로 220-163 | 고성군 공설 화장장 및 봉안당 | (유)자은리영생장의사 (대표:정대환) | 화장장 및 봉안당 소재 자은마을 설립 유한회사 |
| 동해면 장기리 산209-2 | 장기공설공원묘지 및 봉안묘 | 정동연 (개인) | 지역주민 |

○ 위탁개요

- 위탁 운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기 위탁내역: 2019. 1. 1. ~ 2019. 12. 31.(1년)
- 위탁내용: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

라.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특성상 사체와 유골 처리 업무로 일반 개인, 보통 인부가 수행하기 어려워 장사관련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기술성, 전문성 등 확보

마. 향후 추진계획

- 2019. 11월: 위탁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
- 2019. 11월: 사업계획서 등 검토, 심의
- 2019. 12월: 재위탁 계약 및 위탁 계약증서 발급

바. 참고사항

-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별임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기간(2019. 1. 1.~ 2019. 12. 31.)만료와 관련됨.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재위탁 방식으로 관련 제반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
-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 규정

II. 장사시설 현황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현황

- 고성군공설화장장 (기준: 2019. 9.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 | 화장로수 | 화장능력 | 방식 | 비고 |
|-----------|-----------------|----------|--------|------|------|-----------|----|
| 고성군 공설화장장 | 상리면 장치로 220-163 | 1985.10. | 102 | 2 | 6구/일 | 무연무취 (등유) | |

- 고성군공설봉안당 (기준: 2019. 9.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 | 봉안능력 (기) | 봉인기수 | 잔여 | 비고 |
|-----------|-----------------|---------|--------|----------|-------|-----|----|
| 고성군 공설봉안당 | 상리면 장치로 220-163 | 1991.12 | 482.19 | 4,206 | 3,529 | 677 | |

- 장기공설공원묘지 (기준: 2019. 9.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 | 매장능력 (기) | 매장기수 | 잔여 | 비고 |
|-----------|------------------|---------|--------|----------|------|-----|----|
| 장기공설 공원묘지 | 동해면 장거리 산209-2번지 | 2002.1. | 7,381 | 382 | 258 | 124 | |

○ 장기공설봉안묘

(기준: 2019. 9. 현재)

|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규모 (m) | 봉안능력 (기) | 봉안기수 | 잔여 | 비고 |
|----------|------------------|--------|--------|----------|------|-----|----|
| 장기공설 봉안묘 |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 2002.1 | - | 210 | 27 | 183 | |

□ 현 위탁체(자) 현황

| 소재지 | 시설명 | 위탁처 | 비고 |
|-----------------|------------------|------------------------|---------------------------|
| 상리면 장치로 220-163 | 고성군 공설 화장장 및 봉안당 | (유)자은리영생장 의사 (대표: 정대환) | 화장장 및 봉안당 소재 자은마을 설립 유한회사 |
| 동해면 장기리 산209-2 | 장기공설공원묘지 및 봉안묘 | 정동연 (개인) | 지역주민 |

III. 위탁추진 계획

□ 위탁 대상시설 및 소요예산

(단위: 천원,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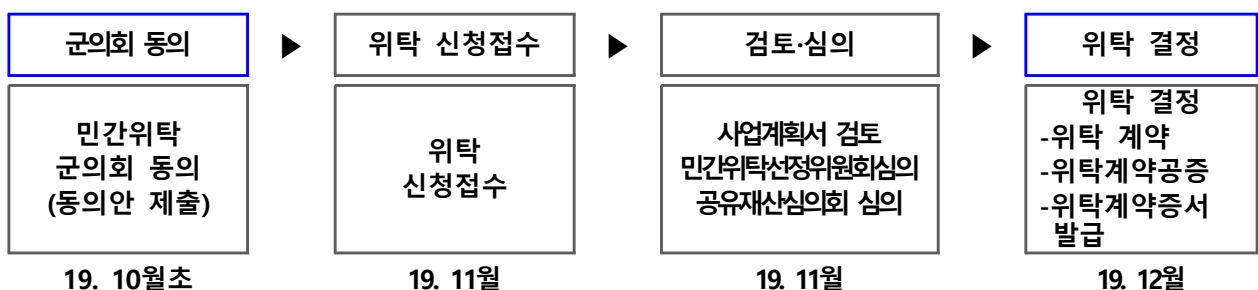
| 시설명 | 소재지 | 소요예산 (군비) | 비고 |
|------------------|-----------------|-----------|----|
| 합계 | | 91,600 | |
| 고성군 공설 화장장 및 봉안당 | 상리면 장치로 220-163 | 88,000 | |
| 장기공설공원묘지 및 봉안묘 | 동해면 장기리 산209-2 | 3,600 | |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위탁방법: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위탁내용: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IV. 행정사항

- 2019. 10.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 추진 계획 수립,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제출
- 2019. 11.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심의
- 2019. 12.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020. 1. 위탁운영 시행

별임2)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도위임사무는 도지사,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
-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르고,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

-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6.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본조신설 2015.10.28.]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고성군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등 준수)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함은 물론 시설관리 관계 협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별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대상시설의 표시) 위탁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 시설명 | 건물연면적 | 주요시설 |
|-----|---------------|-----------------|
| 화장장 | 102㎡(지상1층) | 화장로 2기. 휴게실 40㎡ |
| 납골당 | 482.19㎡(지상2층) | 봉안능력 3,590기 |

제4조(위탁대상업무의 내용)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관리를 위하여 위탁 대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시설관리감독
3. 기타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복장) 근무자는 근무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시의 조치) ①수탁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즉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①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 및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 재난을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업무시간 및 배치) 시설은 이용자가 언제라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9조(업무관리 및 안전교육) ①수탁자는 본 업무가 공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리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등의 사용) ①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협약기간 중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상 파손, 오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무실 등의 사용에 따른 인수받은 물품 외의 물품구입비, 수선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의하며, 수탁자는 무상대여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기기 등의 사용) ①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인계 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 할 경우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위탁자에게 불입한다.

제2장 서류 및 장부

제13조(제출서류) 수탁자는 수탁협약체결후 즉시 다음 서류를 위탁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제3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업무착수계
2. 운영책임자 및 분야별 현장요원 선임계
3.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제14조(일보 및 업무예정표)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2. 운영, 관리일보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②매월 위탁업무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운영, 관리사항
2. 이용자현황 및 유지관리 지표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3장 작 업 요 령

제15조(업무처리방법) ①수탁자는 시설이 고성군민의 공공시설임을 명심하여 공공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시설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

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운영관리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설의 운영 관리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고장 등으로 시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정비) 수탁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시설 및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손상, 누수, 부식, 작동상황 등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며, 이상 징후의 조기발견 및 그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시설장비의 교정, 조정,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등 각 시설 및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리 및 개조) 수탁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위탁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수탁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등의 취급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 및 도난) 수탁자는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법, 방화 등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수탁자의 부주의로 도난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탁업무의 인계 등

제20조(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①수탁자는 협약후 인계, 인수 전까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시설운영 전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 근무원에게 수탁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인계, 인수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1조(운영세칙) ①위탁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식 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의견의 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와 해석 또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끝.